사 업 명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 - 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영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8,372	9,161		11,202		2,0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10년 문화재보호기금 도입운영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개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97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강화	694	742		753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한 문화재의 전문적, 체계적 보존관리 지원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애호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역량강화를 위해 거시적·선제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 정책업무 협의 활성화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정책추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 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상훈법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2조**

-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추진경위

<지자체역량강화-주민공감사업>

▪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존관리의 필요성 홍보 및 문화재와 더불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추진

- 시작연도 : 2014년~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백만원)	149	150	100
지원 지자체	5	6	6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매년 문화유산 보존·활용·연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훈장 : '05년부터 매년 3명, '16년부터 6명
- 문화유산상(대통령 표창) : '04년부터 매년 5팀(개인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위원회 운영(8개 분과 / 위원 : 78명, 전문위원 : 176명), 지자체 보조(신청·공모 / '18년 울산광역시 중구 등 4개 지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유문화재 관리 (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국유문화재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유문화재관리	720	666		668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지역 내 국유재산 취득을 통한 국유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
- 국유문화재 관리지자체 지원 등을 통한 국유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와 관리주체 일원화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1항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항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체계적 DB화, 사유지 매입 및 교환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해소 및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 국유문화재 재산 중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가 곤란한 광활한 토지(임야)를 해당 시·군에 관리 위임함으로써 도벌, 무단점유 방지, 산불예방 등 문화재 및 동보호구역 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

사 업 명
무형문화재보호 (1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문화재보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4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무형문화재보호	25,584	18,790		17,301		△1,4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10.17. 유네스코 총회 채택)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공개·전승활동 관련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3.27. 공포/ 2016.3.28. 시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
▪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시 보조금 지원조항 신설)
▪ 1965년 전승활동 지원(구호비, 치료비 등)
▪ 1968년 60세 이상 보유자에게 생계보조금(월 3,000원) 지급 시작
▪ 1974년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작
▪ 1982년 「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 실시 규정 신설, 전수교육 소요 경비(전승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보유자 월 250,000원)
▪ 200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보유자 90→100만원 등)
▪ 2007년 보유단체 운영비 인상(100→120만원), 전수 장학생 장학금 인상(12→15만원),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 지원
▪ 2008년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의무조항 신설
▪ 2009년 월정전승지원금 인상 및 차등 지원 : 전승취약종목(50개 종목)(100→130만원)
▪ 2010년 전수교육관 건립 일반회계로 전환 (‘05년 균특회계)
▪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3.28.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무형문화재 7개분야 138개 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 6,600여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51개소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19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체보조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업 명
무형유산원운영 (1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유산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무형유산원운영	10,752	22,454		21,017		△1,4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무형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중심 기관으로 무형유산 자료 수집· 보존·연구·아카이브 구축 등 수행
- 무형유산 교육·체험·공연·전시 서비스 제공으로 무형유산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지원, 기·예능분야 전승 및 활성화 지원,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1조(당사국의 역할) : 자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무형원 조직 확대 : 4과 40명 → 43명('16. 5. 1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전승자(6,504명) 및 보유단체(66곳), 전수교육관(152개), 무형유산원 시설(부지면적 59,930㎡, 연면적 29,615㎡, 7개동(공연,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국제회의장 등), 지하 1층/지상5층), 일반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보조(국비 100%)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1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3,396	4,078		5,195		△1,1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해양문화재의 핵심인 수중 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를 통해 선박발달사 및 항해

기술 규명

- 수중발굴유물 및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존·활용방안 마련
- 교육·홍보·전시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확보
-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재 발굴·연구·전시·홍보 기관으로서 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종합정리,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시·교육으로의 활용과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해양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제5조(적용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

② 추진경위

- '94. 5.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3.15 : 해양유물연구과, 전시홍보과 신설(대통령령 제1998호)
- '09. 4.2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로 기관명칭 변경
(연구기능 강화)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추진
  · 해양유물의 전시 및 홍보,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유물의 구입·대여·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 학술교류, 학술도서 및 자료의 발간·배포, 그 밖의 해양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업무로 함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박물관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필요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 해양문화유산 전시 운영(3,432㎡ / 2,697점)
  · 해양문화유산 소장품 국가귀속 및 등록관리(508㎡ / 53,225점)
  · 특별전 개최 및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운영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홍보·교육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
  · 전시관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해양문화유산 관련자 등

사 업 명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3,118	3,451		5,362		1,9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 위상과 기능 강화
- 수중문화재 조사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수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로 유물의 복원과 전시자료 활용
- 지속가능한 수중문화재 인양·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수중문화재 탐사·발굴조사(전국),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32조(가지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② 추진경위

- '81.08.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01.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05.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
- '94.12.1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개관, 전시·사회 교육사업
- '02.~현재 : 본격적인 자체 수중발굴 시작
- '07.03.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04.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0.05.25 : 직제개편(고위, 4과/46명 ⇒ 고위, 4과/50명)
- '11.06.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3.05.30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누리안호) 발굴현장 운영 시작
- '17.06.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수중문화재 탐사 및 발굴조사, 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서해문화재과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발굴기관·관련기관 및 학계 관계전문가 등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	일반회계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9,055	10,496		11,010		5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 학사운영 지원, 시설관리, 대학도서관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 학술종합정보관 개관
- 2002. 3. 4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 학과 정원 560명 개설 완료
- 2008. 5. 13 : 학술종합정보관 종합정보자료실 개실
- 2012. 7. 1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
- 2012. 11. 30 : 학술정보관 증축공사 완료(1,880㎡)
- 2013. 3. 4 : 대학원 개원

- 추진배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4년제 국립대학으로 설립(개교 2000년 3월)

·문화재정책 중장기비전 '문화유산 2011'의 핵심과제인 '핵심역량 강화'의 3개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 과제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내실화·고도화 세부 추진과제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학부 운영 : 560명 * 매년 140명 선발

·대학원 운영 : 190명('18년 기준) * 매년 석·박사과정 100명 선발

·시설관리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사 업 명
대학원 시설운영 및 기반구축 (12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문화 및 관광

구분	문화재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학원시설운영 및 기반구축	4,475	698		6,243		5,5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학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교육 및 연구활동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제8조(대학원)

-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제17조(교육재정 등)

-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3호) 별표(제 13조제1항 부속시설 등)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13년 ~

ㅇ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11.7.1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설립추진팀 구성('12.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12.7.1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5.3)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

ㅇ 사업규모

- 대학원 연구관 건립('17~'19년 / 사업비 185억원)
  ·연면적 1동 10,541㎡ / 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사 업 명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1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전통문화교육원운영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1,962	2,126		2,263		1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양성)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ㅇ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② 추진경위

ㅇ 1차년도 연수원 건립 시설비 및 설계비(10억) 반영('05년)

ㅇ 준비인력확충('05.8) 및 연수운영과정 준비('06~'07)

ㅇ 전통문화연수원 준공('07.12) 및 전통문화연수과정 운영('08.3~)

ㅇ 전통문화연수원, 연수운영과('08.8) 직제 신설 및 연수기획과('09.4) 증설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교육기획과로 명칭 변경('12.7월)

ㅇ 전통기능교육센터 설계('09) 및 시설 건립('10~'11)

ㅇ 전통기능교육센터 완공('11.12월) 및 개원('12.3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과정 21종목(기초·심화·현장위탁 각 7종목), 직무·전문·사회·국제협력 35과정, 사이버 20과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문화재 담당공무원, 문화재수리업체 및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1235-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대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5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정보전산센터운영 (정보화)	769	970		898		△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교육행정, 대학경영, 학술정보 관리 등 업무전산화

○ 학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컴퓨터 실습지원

○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교수-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대학은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2000. 5월 : 전자계산소 개소
- 2001년 : 학사행정시스템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 2003년 : 모바일캠퍼스시스템 구축, 이중 방화벽시스템 구축
- 2004년 : 학술정보관 통합(전자계산소,중앙도서관), 학사행정시스템
- 2006년 : 정보보호 및 QoS 시스템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시행
- 2008년 : 개인정보보호 및 학사통합/교원업적관리시스템 구축
- 2009년 : 전통문화학교 중장기 정보화 발전방안(ISP) 수립
  e-포트폴리오 등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10년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2차) 추진
- 2011년 : 캠퍼스 무선랜 등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 2012년 : 대학원 입시 및 학사관리스템 구축
- 2013년 : 전산기계실 확장이전 및 운영기반 마련, 통합전산실습실 구축
- 2014년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현장실습관리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2015년 : 자료유출방지(DLP)시스템 및 서버가상화 서비스 구축
- 2016년 :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고도화(반응형 웹 구축)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학사운영(대학 7개학과 560명, 대학원 5개학과 190명), 학사행정(1처 1원 5과, 부속기관 9), 전통문화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서비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교직원, 전통문화 관심 예비대학생 등

사 업 명
사적관리 (2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사적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사적관리	1,085	1,222		1,110		△1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사적) 지정·해제, 보수정비 설계검토, 현상변경제도 운영ㆍ관리 및 제도개선,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검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문화재 주변 지역의 바람직한 경관관리 구현으로 효과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제35조(허가사항),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4조(정기조사)

② 추진경위

- 문화재에 대한 사적 지정·해제,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검토,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문화재 주변 지역의 바람직한 경관관리 구현으로 효과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4년 ~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보존·관리(498건), 사적 유형별 매뉴얼 마련, 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현상변경 처리 및 허용기준 마련, 사적 실측 및 DB구축, 역사문화환경관리기준 개선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고도 보존 및 육성 (2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5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고도 보존 및 육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고도 보존 및 육성	8,289	8,495		3,000		△5,4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과거의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 : 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 특성에 부합한 바람직한 고도 이미지를 창출하여 고도의 가치제고 및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사업 비용)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등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등

② 추진경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5 공포) 및 시행('05.3.6)
- 고도 관리 정부정책 전환('11.7.21) : 고도 보존 → 고도 보존 + 육성
  * 법률 개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 '11.7.21, 시행 '12.7.22)
- 4개 고도 지구 지정 완료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5)
- 고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14년 공주, '17년 익산, 경주, 부여)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14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628호, '14.4.28)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17년~)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700호, '17.12.5)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고도지정지구(경주·공주·부여·익산) 1,302.4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문화재청),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고도 지자체(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 사업 수혜자 : 고도지역 주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2호

사 업 명
문화재수리기술진흥 (2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3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문화재수리기술진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189	1,849		1,681		△1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수리기법과 기능의 맥을 전수하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기술력 향상 및 자긍심 고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2.3)에 따라 제도 개선한 정책(기술, 기준, 전통재료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및 문화재수리업 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및 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 보호활동의 지원 등)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152호/'15.9.14)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16.9.19)
- 한·일 문화재교류 토의기록(ROD)('03.4)
-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05.11.3)

○ 추진경위

- 직제개편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중요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전담부서 신설('09.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기능 맥 전승을 위한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보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지원, 문화재수리자격제도 운영, 문화재기능인작품전 및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사 업 명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6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754	4,845		4,406		△4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칠백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 및 위업 선양
-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칠백의총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관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사 순의 제향행사 거행, 칠백의총 관람환경 개선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현충사 유적관리 (21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7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현충사 유적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현충사 유적관리	2,270	2,270		2,047		△2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과 함께 현충사의 경관 정비,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림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05.08.)

※ 1970년대 성역화 사업 때 조성된 관람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국민문화수준에도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 재기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2006~2007)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개관(2008년~2011년)
- 현충사 주차장권역정비(2012년 ~ 2013년)
- 현충사 경내권역정비 실시설계(2014년)
- 현충사 경내권역정비(2015년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
- 사업규모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및 현충사운영, 현충사 시설 및 조경관리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만인의총 시설관리운영 (21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9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만인의총 시설관리운영	-	721		717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만인의사의 호국정신 함양 및 위업선양
-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만인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6년 ~

○ 추진배경

[문화재명 : 남원 만인의총(사적 제272호, 1981. 4. 1. 지정)]

-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만관군 1만여 의사를 모신 사적지

· 1597年 9月 : 남원역 뒷 순절의사 유택 조성(1964年 현위치 안장)

· 1977年 ~ 1979年 : 성역화 사업(1979.5.10.일 만인의총 관리사무소 개관/전북도)

· 1982年 :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로 이관(1987年 남원시에서 전라북도로 이관)

· 2016年 5月10日 : 남원 만인의총 국가관리(문화재청)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연도	2012	2013	2015(전라북도)	2016	2017
사업비	-	-	-		721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만인의총 관리소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및 문화재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및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2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10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운영	-	1,985		3,397		1,4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전통 재료·기법 전승의 통합수행 등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2) 사업내용

○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13.12.3)
· 황진하의원 등 10명, 윤관석의원 등 11명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혁신대책 보고(VIP업무보고 '14. 2. 13)
·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개선(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결('15.12.31)
· 법률공포('16. 2. 3) / 시행일('17. 2. 4)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재단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금
- 사업시행주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사 업 명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자연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881	1,010		1,262		2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연유산 지정·해제 조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및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수행
-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수행하고 자연유산 보호·홍보를 통한 보호의식을 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계속
- 추진배경 : 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지정 및 보존, 조사 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2134 - 7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7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50,3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보수정비	305,000	284,500		295,060		10,5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멸실·훼손 등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제1항 : 국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전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

- 1962년 문화재관리특별회계로 사업 추진
- 1989년 일반회계로 전환 사업 추진
- 1999년 총액계상사업으로 전환 사업 추진
- 2005년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비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이양
- 2011년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20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3,913건 및 등록문화재 700건 등 총 4,613건('17.9.30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30, 5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유형문화재관리 (2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유형문화재관리	4,232	4,956		4,863		△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조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기반 마련

◦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 실태조사, 보존처리, 보수정비 등을 통해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보)로 기록화를 통해 문화유산의 이해도 및 홍보효과를 높이고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자료 제공

◦ 국가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관리 도모

◦ 국가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유무형 전통계승 및 보존·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대국민 문화체험 교육과 관광자원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4조(정기조사)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재보호법」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② 추진경위

- 낙산사 동종 소실('05)로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기록사업 추진
- 국가기록유산 포털자료의 한글 미번역을 감사원 지적('05)
-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적(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
- 고전 번역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 국정감사 지적('11)
- 조선왕실도서의 항구적 보존 관리 기반 마련 및 정부 3.0과 문화융성을 위한 규장각·장서각 소장 기록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추진('14~)
-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여 정확한 고증에 의해 복원할 수 있도록 정밀실측의 필요성 대두
- 민간, 학계 등의 관심이 점증되고 있으나, 자료 미확보로 실측 및 DB화 사업 추진
- 182개소의 국가민속문화재(고택 및 민속마을)를 지정하여 보존관리 실시 중
- 근대문화유산 : 696건의 등록문화재를 등록하여 보존관리 실시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동산, 건조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근대)] 지정 및 보존·관리, 등록문화재(동산, 건축물·시설물) 등록 및 보존관리

·2017. 6월 현재 지정 및 등록현황 : 국보 330건, 보물 2,079건 /국가민속문화재 182개소(고택 175, 민속마을 7) / 사적(근대) 37건 / 등록문화재 696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재)한국학중앙연구원	50%/ 100%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사 업 명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21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4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	2,500		2,50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실도서의 항구적 보존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규장각 소장 기록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대 소장 국유문화재 관리 협약('16.6.24) 체결에 따라 국유 문화재 24만여점에 대한 위탁관리 비용 지원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훼손 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정밀상태 조사, 보존처리, 해충종합방재 등 관리에 따른 경상비 및 관리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9조 (관리위탁)
-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화재 관리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서' 제7조(문화재청 의무)

② 추진경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11.12.28)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 서울대학교와 위탁 국유문화재의 보존 활용 업무협약 체결 ('16.6.24.)
  * (문화재청) 24만 여건의 위탁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서울대학교) 위탁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
- 사업규모 : 서울대학교 국유문화재 242,570점의 보존관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앙도서관, 박물관)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00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사 업 명
경복궁 종합정비 (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경복궁종합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경복궁종합정비	5,376	5,400		6,852		1,4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제의 의해 훼손·멸실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 자존심 회복 및 관광자원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왕궁 원형복원 78-1-2, 1998. 6.)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보고(2011. 2월 장관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015.12월 청장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차)(2017. 9월 청장 결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2045년
- 사업규모 : 경복궁 소주방, 흥복전, 영훈당 등 80동 복원 6,61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덕수궁 복원정비 (2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덕수궁복원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덕수궁 복원정비	1,176	2,260		2,980		7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제 강점기 및 개발 등에 의해 변형 훼손된 덕수궁 돈덕전 및 선원전 등의 주요 전각을 복원·정비하여 왜곡 단절된 역사 연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조선왕궁 원형복원)

② 추진경위

- 2004년부터 일제에 의해 왜곡된 덕수궁의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2039년
- 사업규모 : (중심영역) 광명문 이전, 돈덕전 및 조원문 복원정비
  (선원전영역) 주요 전각·부속건물 53동, 궁장, 상림원 및 지형 등 복원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영녕릉보존정비 (22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4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영녕릉보존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영녕릉보존정비	5,791	7,398		6,581		△8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영·녕릉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왕릉 원형 복원
- 영릉·영릉의 시설물, 조경 등의 경상적인 유지보수와 세종대왕탄신 숭모제전 등 고객유형별 맞춤형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대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사적지 관리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1항(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문화재 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영녕릉종합정비 기본계획(2004.12)

○ 세종박물관 건립예정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재실터 유구 발견(2006.10)

○ 영녕릉 종합정비 수정보완용역(2006.12)

○ 1,2차 영릉 재실 터 유적발굴조사 실시

○ 영·영릉(英·寧陵)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 (2008)

○ 영·영릉(英·寧陵)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2009. 5)

○ 영·영릉(英·寧陵) 능제발굴 조사 (2011)

○ 영·영릉(英·寧陵)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 완수 (2013)

○ 영·영릉(英·寧陵) 종합정비 1단계사업 완수 (2014~2016)

○ 세종대왕탄신 숭모제전 행사규모 확대 및 국민적 축제로 유도하여 관광자원화 정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영녕릉 능제복원, 세종대왕 탄신 621돌 숭모제전 거행, 조경 및 시설관리,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궁능문화재관리운영 (2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문화재관리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궁능문화재관리운영	13,094	22,187		20,545		△1,6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 및 종묘 경상운영, 시설관리·정비 등 국가문화재의 적기 보수 및 관리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문화재 긴급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유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자연적·인공적 훼손을 방지하고 적시에 보수함에 소요되는 유지관리경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등의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가치관 고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조선왕릉보존관리 (22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2
명칭	궁능원보존관리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조선왕릉보존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선왕릉보존관리	20,369	23,265		28,118		4,8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릉 118기의 고건물 등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복원하고 전통조경과 역사경관림을 조성·관리하며 훼손된 능제를 복원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관광자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적지 내 문화재 훼손방지 및 문화유산 원형보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조선왕릉 118기(관리면적 15,778,75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관람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100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1항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1항 3호

사 업 명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22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4
명칭	궁능원보존관리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382	383		389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118기 등 문화재구역의 전통조경 복원과 경관유지에 필요한 고유 수종을 생산 양묘하여 조경정비 시 보급함
- 천연기념물 후계목, 특산식물, 독도 등 천연보호구역 고유식물의 보존 증식 보급
-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부족한 소나무 특수·특대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삼척에 위치한 준경묘·영경묘의 울창한 소나무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

보수 및 복원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 공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및 조선왕릉 보전관리계획(2007.12월)
-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② 추진경위

- 조선시대 궁중 정원관리 및 과목의 식재·접목 등을 관장하던 관청 기능을 현대적 계승(조선초 동산색 → 1394년 상림원 → 1466년 장원서)
- 1972년부터 궁·능·원의 전통조경 정비 및 경관유지에 고유수종이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양묘 생산 등 사업 추진
- 1999년 감사원 감사 시 복원·보수용 일부 목재를 수입목재로 사용한데 대한 감사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한 결과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를 체계적으로 생산 가능한 삼척 준경묘·영경묘의 산림관리 추진
- 2006년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령 시행에 따라 문화재 복원용 목재 육성림인 준경묘 일원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통수목양묘장 6개소(116,034㎡), 삼척 준경묘·영경묘(5,078,0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65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8,717	9,439		10,507		1,0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궁·능·유적기관의 관람시설 개선 및 관람서비스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람환경 개선과 경상관리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매장문화재보존 (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보존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매장문화재보존	661	718		724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지표·발굴)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된다”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ㅇ 추진배경 :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매장문화재보존	800	800		80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교육 시행과 학술 연구활동 지원으로 매장문화재조사 및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 우리 동네 유적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항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6년
- 추진배경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2005)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비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매장문화재조사연구 종사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예방관리강화 (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문화재예방관리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예방관리강화	1,444	1,569		1,786		2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공항, 항만 및 국제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여 비문화재 확인 업무 수행을 통한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
- 사범단속 활동 강화를 통한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 문화재 안전점검,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문화재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재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④ (생략)

  ⑤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⑤ (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1968년부터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983년부터 시·도 위임운영, 2007년부터 문화재청 직접 운영
- 문화재의 도난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05년부터 국민의식 계도 홍보 추진 및 사범단속활동 강화
- 2008년 숭례문 화재 계기 종합방재대책을 마련,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 소방훈련 실시
- 문화재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8 ~ 계속
- 사업규모
  · 인천국제공항 등 18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 문화재안전점검, 교육훈련, 행사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한국소방안전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소방안전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 (31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10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인건비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	11,545	12,386		13,508		1,1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관한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정규직 인건비(인건비, 기타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31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1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1,475	1,584		1,667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성과창출 능력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및 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 (3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13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R&D)	542	633		618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연구소 청사관리를 위한 위탁사업 수행 및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물자의 구입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4. 05. 04 서무과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로 부서 이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1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문화재국제교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국제교류	252	193		207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간 문화재 교류 협력으로 경험과 성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증진 및 국제사회 협력 파트너쉽 형성

○ 우리나라 문화재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문화강국 한국의 국제사회 인지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② 추진경위

○ 기관 간 교류 협력

- 한-중 문화재 교류 합의서 체결('98년)
- 한-멕시코 간 문화유산의 보존 감정을 위한 합의서('01년)
- 한-일 문화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토의기록 체결('03년)
- 한-중 문화재 교류 합의서 갱신('05년)
- 한-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06년)
- 한-몽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06년)
- 한-호주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09년)
-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 한-멕시코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 한-필리핀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 한-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 한-베트남 세부실행계획 체결 ('14년)
- 한-이탈리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4년)
- 한-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갱신('16년)
- 한-몽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갱신('16년)
- 한-중국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갱신('17년)

○ 문화재 해외홍보

- '08~'17 : 'KOREAN HERITAGE' 영문 홍보지 연간 4회 발행·배포
  (총 950개소, 연 14,000부 배포)

□ 주요내용

-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ㅇ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ㅇ 사업규모 : 베트남, 중국, 라오스 등 문화재대표단 상호 교류, 영문 홍보소식지 연 4회 발간
-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재교류 대상국
-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국제협력(ODA) (33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2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문화재국제협력(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국제협력 (ODA)	2,366	3,191		3,197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위험에 처한 협력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 지원 및 국제기구(UNESCO, ICCROM 등) 기여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외국(미얀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ㅇ UNESCO 세계유산협약 제16조, 무형유산협약 제26조, ICCROM 규약 제2조, IUCN 규약 제12조 및 규정 제23조에 근거

ㅇ 세계유산 신탁기금 : 한-UNESCO 간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서('17년 갱신 체결)

ㅇ ICCROM 신탁기금 : 한-ICCROM 간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서(‘12년 5월 체결)

② 추진경위

ㅇ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문화유산분야 MOU 체결(‘11)
- '동아시아 크메르유적 기초조사 및 라오스 세계유산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11~‘12)
- 홍낭시다 유적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2)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세계유산(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협력 약정 체결(‘13. 11.)
- 보존환경 모니터링·지층분석, 정밀실측, 현장사무소 건립(‘13)
- 지표·시굴조사, 암석 성분분석, 복원 추정도 작성, 유적 고증연구(‘14)
- 시·발굴조사, 진입로 구축, 고증연구, 유적 보수설계, 지반 안전성 연구, 부재 수습·실측, 지하 유구 조사 위한 GPR 탐사, 영상 기록화사업,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수 등(‘15~’16)
- 유적 답도 발굴조사, 석재 보존처리 연구용역, 주신전 보수공사, 왓푸유적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 등(‘17)

ㅇ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관리 지원사업

- 문화재청장-유네스코 사무총장 간담회(‘12. 8)
  ·“바간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지원 요청”
- 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12. 9)
- 미얀마 ODA 추진 정부 간(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협의(‘13. 2)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처리장비 지원(‘13. 9)
- 바간유적(난파야 사원, 짜쿠 사원) 내 보존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14. 11)
- 바간 고고학박물관 보존환경 개선사업(수장시설 구축, 장비 지원)(‘15~’17)
- 바간 지역 지진 발생(‘16. 8), 미얀마 측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 요청(’17. 1)
-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17. 7)

○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 사업
- 라오스 정보문화부 문화유산국 국장 면담, 무형유산 ODA 지원 요청(‘15. 3)
- 라오스 무형유산(캔, 람봉) 기록화 작업 추진(‘15)
- 라오스 무형유산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원(‘15. 11)
- 캄보디아 무형유산(보카토) 기록화 및 인지도 제고 활동 지원(‘15～’16)
- 라오스 무형유산(까오꼽, 껍사랑쌈싸오) 기록화 작업 추진(‘16)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도예기법, 전통회반죽장식) 인벤토리 작성(‘17)
- 카자흐스탄 무형유산(전통악기 제작·연주 등) 인벤토리 작성(‘17)
○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미등재국·과소등재국 대상 등재역량 강화 지원(‘11～’17)
- 라오스,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 지원(‘14～’17)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채택 (‘72)
- 대한민국 협약 가입 (‘88. 9월 가입)
-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활동(3회) : ‘97~’03년(6년)/’05~’09년(4년)/’13년~’17년(4년)
- 총 12건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재 (‘17.7월 현재)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03)
- 대한민국 협약 가입 (‘05. 9월 가입)
- 무형유산위원국 활동(2회) : ‘08~’12년(4년) / ‘13년~’17년(4년)
- 총 19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7.7월 현재)
○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이크롬) 의무분담금 납부
-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이탈리아 로마 설립 (‘58년)
- 대한민국 가입 (‘68년)
- ICCROM 총회 이사 선출 : 김용한 (前보존과학센터장, ‘11~’15)/ 정용재 교수, ‘15~’19)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의무분담금 납부
- 문화재청 가입 (‘09년)
※ IUCN은 UNESCO 협력기관으로 심사대상인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호 지역 지정에 영향력이 큰 전문 기관임. 이에 천연기념물 지정 등 국내 생물권 보호를 총괄하며 세계자연유산을 등재하는 문화재청은 동 기관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의무분담금 납부
○ 문화재청-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간 아태지역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 ‘11년 북한 고구려 고분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종료로 동 기금을 북한을 포함한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확대 설치
※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07.6월), 제179차 집행이사회(’08.4월)시 공식 의사 표명
- 신탁기금 세부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11.7월~12월)
- 한-UNESCO 제4차 신탁기금 회의 참석 (‘12.3월)
- UNESCO신탁기금 운용을 위한 현지협의 (‘13.3월)
- 한-UNESCO 신탁기금 사업 검토 및 승인 (‘13.4월~7월)
- 한-UNESCO 제5차 신탁기금 검토 회의 참석 (‘14.2월)

- 한-UNESCO 신탁기금 사업 검토 및 승인 (‘14.4월~7월)
- 한-UNESCO 신탁기금 사업 승인 (‘15.5월)
- 한-UNESCO 제6차 신탁기금 검토 회의 참석 (‘15.12월)
- 문화재청-UNESCO 세계유산센터 신탁기금 사업 갱신 관련 업무 회의 (‘16.4월)
  ・사업기간(‘17-21), 예산(종전과 같이 200만불), 세부사업 내역 검토 등 논의
- 한-UNESCO 제7차 신탁기금 검토회의 참석 및 한-UNESCO 자발적 기여금 MOU 개정안 승인 회의 참석 (16.12월)

○ 문화재청- ICCROM 간 아태지역 문화재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신탁기금
- 문화재청-ICCROM MOU 체결(‘12년 5월)
  ・ 5년간 협력사업 수행 위한 기금 지원 합의
  ・ 사업 구상 및 운영(ICCROM), 사업 운영 및 집행 감독
- ICCROM 기금사업 협의(‘12년 11월 ~ ’13년 2월)
- 2013년도 지원예산 확정(‘12년 12월)
- CollAsia(보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주제별 전문가 포럼 매년 개최

○ IUCN 주제별 연구사업
- IUCN 주제사업 협의(‘16년 3. ~ 4.) : 화산유산, 지질유산 등 관련 주제연구
- MOU 체결 예정 (‘17년 8월)

○ ICOMOS 주제별 연구사업
- ICOMOS 주제사업 협의(‘16년 3. ~ 4.) : 암각화, 차 문화 경관 등 관련 주제연구
- MOU 체결 예정 (‘17년 8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계속

○ 사업규모 : 양자 및 다자간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
- (양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점협력국 20여개국 대상
- (다자) UNESCO 등 4개 국제기구 대상 분담금 및 신탁기금 공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100%), 해외이전

○ 사업시행주체
- (양자)한국문화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다자)UNESCO, ICCROM, IUCN, ICOMOS 등

○ 사업 수혜자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태 20여개국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5-2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0	

사 업 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3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3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2,620	2,600		2,831		2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아시아-태평양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유산보호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의 국제적 이행 제고 및 유네스코 문화분야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상 및 선도적 역할 강화
- 국제적·지역적 무형유산 정보공유 체계 및 무형유산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2026호) [2010.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2015.3.]

② 추진경위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대한민국 : '05년 가입)
-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한국정부에서 센터 유치의사 공식 표명
- 2006년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기획단 발족(9월)
- 2008년 제17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카테고리2급 기관 센터설립 제안서 제출(2월)
- 2009년 제35차 유네스코 총회 센터 설립 최종 승인(10월)
- 2009년 아태무형유산센터 법정 법인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정(12월)
- 2010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 센터' 설립을 위한 한-유네스코 간 협정 체결(6월)
- 2011년 센터 설립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298차 국회 본회의, 3월)
- 2011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문화재청 산하 법정법인, 7월)
- 2011년 센터 창립이사회 및 창립기념 국제회의 개최(11월)
- 2012년 이삼열 사무총장 취임(1월)
- 2015년 센터 국내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법률 변경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 2015년 허 권 제2대 사무총장 취임(4월)
- 2016년 한-유네스코 협정 갱신(제199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4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유네스코 카테고리Ⅱ급 기관인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48개국 정부, 전문 및 교육기관, NGO, 전문가, 공동체
  · 유네스코 본부 및 아태지역 8개 지역사무소, 무형유산 분야 7개 C2센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33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4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70,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26,651	26,997		24,040		△2,9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관광 효과 증대
-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보수정비) 지원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학술 및 연구 지원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관련 지원
- 세계유산 관련단체의 국제 활동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88년 가입)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5년 가입)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우리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유네스코 외교 강화」

- 청와대 미래비전기회위원회 '미래비전 TF' 선정 주요 추진과제 ('08년)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문화강국화

② 추진경위

- '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첫 등재
- '97년 훈민정음 및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첫 등재
- '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첫 선정
- '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 '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
- '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첫 등재
- '08년 무형유산협약 위원국 지출
- '09년 무형유산협약 심사보조기구 진출

- ‘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 ‘09년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 '09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인류무형유산 등재
- ‘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 ‘11년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2년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 ‘14년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 ‘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 ‘15년 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 ‘16년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7년 제12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세계유산 12건, 인류무형유산 19건, 세계기록유산 16건, 잠정목록 16건에 대한 홍보 관리사업 및 신규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자체 보조	7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33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5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21,501		21,351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보수정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첫 등재
- ‘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
- ‘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첫 등재
- ‘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 ‘09년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 ‘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 ‘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 ‘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 ~ 계속
  * ‘16년 기준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분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예산을 ’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세부사업으로 분리
- 사업규모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고보조금 사업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33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6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ㅇ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7,804	5,328		5,222		△1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를 통해 국민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현지 활용
- 환수 분야의 특수성(외교적·정치적 상황 영향 등)을 고려, 민간(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의 협업(Two-track)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유연성 및 효과성 제고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향후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67조~제69조의3

▪국외문화재 환수에 관한 정부의 책무 및 예산 확보 규정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및 운영 규정

- 1970년「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발효: 1972.4.2./가입: 1983.5.14.)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각 국가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 보유 규정 (제5조)

② 추진경위

- 2017년 강노 초상 매입 환수
- 2017년 경매 출품 도난문화재 옥천사 나한상 환수
- 2017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반환
- 2016년 수빈박씨 인장함 1점 수증
- 2016년 독일성오틸리엔수도원 곤여전도 병풍 배접지 등 환수
- 2015년 미국 경매 출품 도난 불화 환수
- 2015년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으로부터 덕혜옹주 유품 7점 수증
- 2015년 문화재청 - 美 시애틀미술관 협상을 통한 덕종어보 환수
- 2014년 한미 수사공조에 대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환수
- 2013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 2012년 7월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 2011.5월 국외문화재 환수전담 조직 설립
- 2011.2.4. 국가가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예산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 (「문화재보호법」제67, 68, 69조 시행)
- 2010년 11월 : G-20계기 한-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 반환 합의
- 2010년 11월 : APEC 계기 한-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합의
- 2008년 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 자료 대국민 서비스
- 2007년 10월 : 미국 LA카운티 박물관 소재 한국문화재 홍보물 제작 지원
- 2007년 10월 : 어재연장군기 장기 대여
- 2007년 7월 : 김시민 공신교서 환수
- 2006년 7월 : 동경대 소장 조선왕조실록 환수
- 2006년 4월 : MBC 느낌표 '위대한유산 74434' 방송

- 1992년~2005년 : 한일문화재협정, 북관대첩비 등 반환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 국외소재문화재(약 16만여점)의 환수 및 현지 활용 도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단체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0%	·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

사 업 명
문화유산 활용 진흥 (3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1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40~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유산 활용 진흥	20,020	26,126		27,334		1,2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왕실문화 재현사업 지속 추진
-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 등 늘어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비 및 문화유산 창조적 활용,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구축
-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궁궐문화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문화유산 활용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우수사례로 제시
-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를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및 이야기자원의 재가공으로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등 문화유산 부가가치 극대화 실현
- 공공시설물(안내판) 및 관람편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 사업 추진배경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문화재 정책의 기본 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적절한 활용이 바람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심과제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례와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요구 대두

·국가차원의 문화재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사업 전개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개발·운영(생생문화재, 향교·서원·산사 활용, 문화재야행)
・문화유산 스토리텔링활용 프로그램 개발(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등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72호)

사 업 명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3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4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810	601		1,063		4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3D 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초기 시장 창출과제로 '문화재 홀로그램형 복원 및 기록화 사업' 선정('10.4.8.)

· 문화유산을 국가전략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건립 관련 MOU('11.3.18.) 및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 MOU 체결('12.6.28.)

· 접근이 제한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문화유산을 3D 입체영상 등 전시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 체험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 없음

② 추진경위

- 국가고용전략회의「3D산업 발전전략」과제로 '문화재 홀로그램형 복원 및 기록화 사업' 선정('10.4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에 관한 MOU 체결(문화재청-행복도시건설청/'11.3월)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건립방안 연구용역('11.11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식 체결 (5개부처, '12.6월)
- 디지털문화유산 임시영상관 운영('12.7월~, 세종시)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전시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연구용역('16년)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현황('11~'17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명	석굴암, 승무, 팔만대장경	융릉, 건릉	창덕궁, 줄타기, 하회별신굿탈놀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서원	한양도성, 태평무	안동 하회마을	수원 화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차적으로 콘텐츠 영상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한국문화재재단지원 (34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6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한국문화재재단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문화재재단지원	7,834	7,820		8,781		9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을 통해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도모

·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경상운영비, 정보화사업)

· 전통문화 홍보사업 및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전수교육관 공연전시, 한국문화의집 공연, 전통공연 콘텐츠 개발, 전통예술 공연 홍보,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전수교육관·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국유재산 시설보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89년
- 추진배경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증진하고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민 수혜 대상(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전통문화 홍보사업,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전통문화유산 향유계층) /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34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01
명칭	문화재 활용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10,645	10,264		10,946		6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유물의 체계적인 연구·보존 및 전시·교육·교류를 통해 격조 높은 왕실문화의 가치를 가꾸고 알리는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ㅇ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ㅇ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의 촉진 등)

ㅇ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ㅇ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월)

ㅇ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8.15.)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관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12개 전시실(7,218㎡) 운영 및 상설·특별전 개최
  · 대상자별 맞춤형 왕실문화 교육 개발, 운영
  · 소장유물(44,760여 점) 조사·연구·관리 및 보존처리
  · 박물관(연면적 29,665㎡) 시설관리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102-1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 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3118-2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 도모
- 그 외 기관·선박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기본경비인 일·숙직비 및 특근매식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회계연도별 책정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3118-2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 전시관 환경관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관람객에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국고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회계연도별 책정
- 사업규모 : 본관, 별관, 태안사무소 관람환경편의시설 및 유지보수(시설관리용역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람객, 관련 전문가 외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71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42,335	40,714		42,837		2,1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문화재청(본청)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보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본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직원보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98명(총장 1명, 교원 36명, 조교 9명, 직원 53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교직원

사 업 명
본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348	1,116		1,11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본청 기본경비 중 일부비목을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편성·운영, 경직적 정원·보수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 부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를 둔다.

·제5조 (하부조직) 제1항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궁관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 기본경비	궁관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궁관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86	104		10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 및 종묘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의 과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본청기본경비 (7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청기본경비	1,806	2,188		2,213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용·배치하고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하여 개인 능력 발전과 조직 역량 제고
- 청사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문화재 및 문화재행정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 기획조정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문화재정책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경비 운영 지원
-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해제 및 현상변경,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수리기술 향상 등 문화재보존국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공통기본경비
- 문화재활용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례·반복적 경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8조(신규채용), 제50조(교육훈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32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훈령 제237호, '11. 8. 1.)
- 2015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5년도 예산 작성 세부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신라왕경추진단)을 위한 기본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궁관리기본경비 (71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기본경비	궁관리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궁관리기본경비	173	219		219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 및 종묘관리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의 기관운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1	195		19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ㅇ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ㅇ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98명(총장 1명, 교원 36명, 조교 9명, 직원 53명)

· 시설현황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38동(58,68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교직원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94	113		117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현충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10	329		351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현충사관리소 인건비성 조직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세종유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5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세종유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세종유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2	22		2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인원,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직책급, 과운영비 등 기준성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	18		18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칠백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60	73		7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립무형유산원 인원,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무형원 조직 확대 : 4과 40명 → 43명('16. 5. 1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년~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8-2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8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	56	61		6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를 둔다.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조선왕릉관리소) 제1항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수리복원팀·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릉 118기 보존 및 관리 기관 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관람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만인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만인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7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	일반회계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	1,212	1,478		1,473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례·반복적 운영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 1항(교육재정 등)

-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조 직 : 1원 1처 5과, 2개 대학원(5개 학과), 2개 단과대(7개 학과)
  · 교직원 : 총 99명(총장 1명, 교원 36명, 조교 8명, 직원 54명)
  · 시설현황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및 교직원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7118-2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현충사기본경비 (7118-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현충사 기본경비	424	433		43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 현충사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세종유적기본경비 (7118-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5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세종유적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세종유적기본경비	70	74		7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운영 기본행정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칠백의총기본경비 (7118-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칠백의총기본경비	84	86		8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칠백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무형유산원기본경비 (7118-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무형유산원기본경비	47	59		59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무형유산원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무형원 조직 확대 : 4과 40명 → 43명(‘16. 5. 1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년~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 (7118-2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8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선왕릉관리소 기본경비	203	243		255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를 둔다.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조선왕릉관리소) 제1항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수리복원팀·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릉 118기 보존 및 관리 기관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만인의총기본경비 (7118-2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60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만인의총 기본경비	-	30		3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만인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사 업 명
문화재 정책대변 (7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변인실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 정책대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 정책대변	1,018	953		974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의3

·제5조 (하부조직) 제2항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제5조의3 (대변인) 제1항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2항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 주요정책 등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2005년 ~ 계속)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정책고객 30,000여명, 소식지 구독회원 38,000여명, 각종 언론 매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소식지 구독회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 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 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 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483	429		450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창의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 구현
- 정부 혁신으로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위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조직분야 과제 추진(기능강화 마련 및 업무기능 분류(BRM)사용자 교육 등 체계적 관리), 부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필요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대국민 업무품질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17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자부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정부혁신 추진 시작('04년~)
- 친서민 생활공감정책 발굴·시행('08년)
- 행안부 「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11년)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함에 따라 문화재청 자체 계획인 정부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의 공개·개방을 통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06년 성과 중심 정부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업무평가 수행 및 성과관리 운영 시작
-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화재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지속 시행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 구상발표('12.7.11)에 따라 문화재청 자체 계획인 '문화유산3.0'을 수립하여 정보의 공개·개방을 통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조직분야 과제 추진, 문화재청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산운영경비 (7133 - 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운영경비	전산운영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전산운영경비	684	744		766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원활한 문화재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 인터넷망, 전산장비 등의 운영, 유지보수
- 기록정보자원 관리 및 기록관(자료실)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기록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 제3조(정의) 제4호)

ㅇ 제19조(기록물의 관리)

-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ㅇ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ㅇ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을 담당한다.

ㅇ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3. 5. 문화재정보과 신설
- '05. 8.16 기록정보화담당관실 신설(이전 : 문화재교류과 정보화계)
- '09. 4.27 정보화기획팀으로 명칭변경
- '11. 5.25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령 제86호)으로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업무 소관 변경(발굴제도과→정보화기획팀)
- '13. 3.23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정보화기획팀→정보화담당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전산장비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기록정보자원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공공기관, 전국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문화재 관련단체, 문화재 소장자 등 문화재 유관기관 전체 및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7134-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964	3,900		3,90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청과 지자체, 협업기관 등이 문화재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행정 종합체계 구축운영
- 문화재 공간정보 확충 및 규제지역 공간정보 제공으로 과학적·합리적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체계 지원

- 사이버 침해사고의 효율적 예방 및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복원을 위한 3D DB 구축,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활용 기반 조성
- 문화유산 3D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3D프린팅 데이터 구축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및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 서비스 확대
- 전문 문화재행정 및 유·무형의 문화유산 핵심아카이브 구축으로 새로운 기록전통문화 재현
- 문화유산 보존·복원의 핵심자료인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도서 등 공공저작물 및 아카이브 수집·보존연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시행규칙 제15조(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제17조(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9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

- 2015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
- 정부 3.0 기본계획(국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문화유산 3.0 실행계획(매장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정보공유)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제39조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제 33조(안전조치의 의무)(개인정보영향평가)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00.6월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 '00.12월 :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01~'05) 수립(건교부)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성 감사원 지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재 전자행정 예산확보
- '04.6월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 '05년~'06년 : 문화재 행정업무 재설계 실시(BPR)
- '05.12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4년~'07년 : 문화재 24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 '06.6월 : 토지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시행
- '07.6월 :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BH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07.12월 : 문화재청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표준안 마련
- '08.4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문화재 GIS 구축 추진)
- '08.12월 : 차세대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U-ISP) 수립
- '08. 12월 문화유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1.27.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10.3~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10.3월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0.4월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보고사항(문화재 GIS의 지속적 확대·활용 추진)

- ‘09년~‘13년 :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1.1월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국가정보원)
- ‘11.5월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개정
- ‘11.3월 :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암호화 예산 관련 자료 제출(행정안전부)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12.1월 : 2012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2.3월 : 문화재청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2년~'16년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12.12월 : 문화재 전자행정 기반 32종의 정책정보 제공
- ‘13.1월 : 2013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3.3월 : 문화재청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3.6월 :「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국토교통부)
- ’13.6월 : 「정부 3.0 기본계획」,「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 ’13.9월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3～’17)(국토해양부)
- ‘14.1월 : 2014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4.3월 : 문화재청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5.6-9월 :「문화재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16.2월 :「문화재청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계획」수립
- ‘09년~‘16년 :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 지표·발굴 및 조사·연구기관, 건설사업 시행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승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소 및 구조센터, 대한수의사협회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전체, 소장자, 일반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문화재 유관 기관·단체, 소장자,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32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생화기반계정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5	301
명칭	문화자원개발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3,310	18,911		27,197		8,2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체계적인 보존·정비·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보조금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2005년부터 매년 10여개 사업에 100여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적 유·무형문화재 및 주변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
- 그동안 경기 북부 주요 사업인 회암사지 종합정비('97~'15) 및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94~'15) 사업, 서울의 정부수반유적 정비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비 사업, 충북의 금속활자 복원 사업, 충남의 돈암서원 정비 사업 등 대표적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 사업규모 : 내역사업별 산출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70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보조금 법률 제4조

사 업 명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3237-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경제발전계정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7	303
명칭	문화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	1,500		500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

※ 10차에 걸친 시발굴조사의 출토유물을 각 발굴기관(7곳)에서 보관 중

○ 남한산성의 종합적인 연구 및 교육, 홍보 강화

○ 국내·외 성곽의 조사 및 보존 연구를 통한 국제적인 성곽 연구 중심 특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보조금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2014년 6월 22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남한산성은 연간 32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관광명소는 물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약5,000여점에 이르지만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전문적인 보존관리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80억원(국비 140억원 / 지방비 140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약28,400m^2, 건축연면적 5,900m^2(지하1, 지상 2층)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보조금 법률 제4조

사 업 명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11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기금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보호민간참여 활성화	1,683	1,829		1,965		1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운영 지원을 통한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제5호(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ㅇ 2005.12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ㅇ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및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추진 경위

- 2004. 11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존의 명예관리인 제도 개선)
- 2005. 4 : 1문화재 1지킴이 신규 위촉
- 2005. 12 :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 2006. 1 : '명예관리인', '문화재행정모니터'를 1문화재 1지킴이로 통합 운영
- 2007. 4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 20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2013. 12 : 삼성에버랜드 등 4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5,604건 위촉(5만9천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5천여명 활동
- 2014. 12 : 포르쉐코리아 등 50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7,109건 위촉(6만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여 명 활동
- 2015. 12 : 동서식품 등 55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8,450건 위촉(61,000여 명 활동 중)
- 2016. 12 : KT&G 등 56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키이 위촉 운영(22,763명), 문화재지킴이 6만여명 활동 중
- 2017. 12 : 우리카드 등 5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7만여명 활동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지킴이(8만여명), 문화유산국민신탁(보전·위탁재산 7개소, 회원 1만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특)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지킴이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	정액(공모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화유산국민신탁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사 업 명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11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		150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족공동유산이자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공동 조사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남북 협력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 '05.12.13~16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 개성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사업 상호협력 합의

○ '06.1.22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간 합의서 체결

- 민족 공동의 역사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관리 사업 협력 추진 합의

○ '06.3.18 : 남북 실무검토 회의 개최

- (남측) 문화재청, 통일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 문화보존지도국, 민족화해협의회

○ '06.4.19~5.2 : 고구려고분군 공동 실태조사 실시(안악 3호분 등 총 10기)

○ '06.4.24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남과 북 문화유적 보존 협력사업 추진 합의)

○ '07.5.15~7.1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시굴조사 실시(1차)

○ '07.5.30~6.9 : 고구려 벽화고분 2기 공동 보존사업(환경측정기 설치, 벽화내벽 탈락 보존조치)

○ '07.9.3~11.9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2차)

○ '08.11.4~12.2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3차)

○ '09.2.23~12.31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관리사업 실시

○ '10.1.26 : 개성 만월대 3개년(2010-2012년) 공동발굴조사 합의서 체결

○ '10.3.23~5.18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실시(4차)

○ '11.11.14~12.31 : 개성 만월대 유적 수해 피해복구 및 유적 보존 실시(5차)

○ '14.7.23~8.16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6차)

- 대형계단 2개소, 출입문지(門址)확인, 대형배수로 4기, 출토유물 1,800여점

○ '15.3.24. : 남북 실무협의(고구려고분 발굴합의서 초안 제시)

○ ‘15.6.1~11.30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7차 / 6개월)

- 건물지 19동 및 금속활자, 용두 등 중요유물 포함 약 3,500여점 발굴

○ ‘15.10월~11월 :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특별전 및 학술회의‘ 남북 동시 개최

- 서울(고궁박물관, 10.13~11.6), 개성(고려박물관, 10.15~11.15) / 약 600여명 남측 인원 방북

< 만월대 공동발굴 조사실적(2007~2015) >

❖ ’07년 1차 조사(시굴조사) 시작으로 ’15년까지 총 7차 발굴 추진
- 전체 조사면적 33,000㎡ 중 약 19,000㎡(약 57%) 조사 완료
- 제2정전(건덕전)을 비롯, 대형축대 2개소·건물지 39여동·대형계단 2개소 조사 및 출토유물 16,500여점 수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개성 만월대 유적

- (개성 만월대) 전체 면적(250,000㎡) 중 서부건축군(33,000㎡) 발굴 추진 중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 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민간 100 자치단체 7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192	1,073		1,019		△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최근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구조·치료·보호 및 홍보 등의 활동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에 기여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조난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전국적인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구조·치료 시스템 기반 조성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보존 및 민속행사 재현으로 향토문화 구심점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의거 관리단체(3개 단체)를 지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따라 경비를 지원함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대행지급법인으로 지정·고시하여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를 지급토록 함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의거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개최 경비를 지원함

② 추진경위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조수류) 관리단체 지정(‘96. 6. 11. 고시)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수달) 관리단체 지정(‘05. 6. 10. 고시)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9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산양) 관리단체 지정(‘09. 4. 10. 고시)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제도 근거 마련('00. 1.12.)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법인 지정·고시('05.10.25.)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법령 명시('08.12.14.)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3년(2012년부터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행)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고취,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피해 발생 이후 사후조치 보다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협력 도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1998년~계속)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2005년~계속)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2009년~계속)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2005년~계속)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2012년~계속)
- 사업규모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3개 단체)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224개소),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13개 광역자치단체, 67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100%), 지방자치단체보조(7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대한수의사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조류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수달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산양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대한수의사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11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95	043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4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일반문화재조사·연구	2,672	2,041		2,114		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정되지 않은 유·무형의 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도난방지 기여 및 보존관리 기초자료 확보
-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동산 문화재들을 일제 조사하여 중요문화재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비지정문화재 보존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② 추진경위

- 2010. 2.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근거를『문화재보호법』에 반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불교문화재일제조사(7.2억/년), 대형불화정밀조사(5.26억/년), ,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지원(8.68억/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사)성보문화재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관련기관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성보문화재연구원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대한불교조계종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1138-3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찰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 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불교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전승 시설 지원

○ 불교문화유산의 진단·보존·복원·연구 등 전승 체계를 마련을 위한 민간 중심(소장자)의 전문 연구기관 건립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원근거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5년 국회에서 당시 예결위원장(김재경 의원), 당시 예산실과의 합의에 따라 ‘16년 사업 타당성 조사(건립 및 운영계획 용역) 3억원 반영

○ 사업 추진 부처의 지원의지 확인 차원에서 문화재청장의 직인 문서 제출을 요구(국회, 기재부)하여,「불교문화연구시설 건립 지원요청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민간보조 100%는 타당치 않다는 당시 기재부 의견에 따라 조계종에서 30%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반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2016)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실시설계 및 기초공사(2017)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건설공사 및 감리(2018)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내부공사 및 감리 등 준공(2019)
- 사업규모 : 10,000㎡(3,025평) 내 연면적 13,172㎡(3,984평), 건물(지하 2층, 지상 2층)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연간운영비의 70%)
-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1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166	1,628		1,640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체험·참여형 문화유산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역사인식 함양에 기여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교구 보급, 교사 연수를 통한 문화유산교육 전국 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 주변국과의 역사분쟁, 숭례문 방화 등 문화유산 훼손사례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유산교육 실시
- 사업시작년도: 2006년~
- 문화유산교육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기초 연구('10/서울교대 산학협력단)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2/(주)컬처앤로드)
- 교육부「역사교육 강화 방안(안)」발표('13.8)

> (중략)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체험 중심 역사교육 강화 ②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 ③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④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 왜곡 대응 강화
> ⑤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

-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 문화유산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중('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사업규모 : 30여개 민간단체, 10여개 지자체 문화유산교육 지원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교재, 교구, 콘텐츠 개발·보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민간단체,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방문교육 및 고고학체험교실 수혜학생, 자유학기제 중학생, 일반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민간단체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11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2,258	2,336		2,429		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문화유산이 갖는 가치와 아름다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고품질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보급함으로서 전 국민의 시공간적 제약 없는 문화유산 접근성 강화 및 향유권 신장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아카이브)·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에 기여하고 미래 활용가치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2009년 헤리티지채널 설립 타당성 및 수요예측 연구용역
- 2009년 10월 헤리티지채널 시범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오픈
- 2012년 헤리티지채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년 업무협약 체결(구글 등 14개 기관)로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확대
- 2014년 업무수행 체계개선(단기용역 방식→한국문화재재단 이관)
- 2014년 6월 명칭변경(헤리티지채널→문화유산채널)
- 2015년 UCI 기반 동영상분할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계속
- 사업규모 : 수요자 맞춤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자체 홈페이지와 20여개 외부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8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12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4,642	6,653		7,067		4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연구소 연구 환경 기반 구축 및 문화유산 연구정보 공개 등을 통해 연구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연구소 운영 지원
- 우수 연구과제 및 고품질 성과관리로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지속적 운영
- 자연유산 전시를 위한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연구소정보화전략계획
- 문화유산연구 종합정보관(아카이브) 운영 중장기 발전방안

② 추진경위

- '04. 12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전으로 청사 이전에 따라 자체관리
- '06. 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7.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07. 04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개관
- '08~'09 :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1~ : 천연기념물센터, 본소 운영, 정보화 사업 통합
- '11~'14 :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3~'15 : 부여·나주(증축)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6~'17 :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7. 02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청사유지관리,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책임운영기관 연구기획 운영, 문화재지 등 학술지 발간, 문화유산연구자료 아카이브 통합운영, 천연기념물센터 전시 및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일반국민, 문화유산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유산 조사연구(R&D) (12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2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유산조사연구(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유산 조사연구(R&D)	18,016	19,056		22,282		3,2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고고, 건축, 미술, 보존과학, 자연문화유산 기초연구를 통한 문화재의 학술적·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학술·정책 자료 확보 및 연구결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술적· 인적교류 확대
- 문화재 보존성 강화를 위한 연구 장비 확충을 통한 문화재 보존과학연구의 첨단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2(문화재의 연구개발)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0년도
- 추진배경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문화재연구사업 추진

·발굴조사, 미술·건축 조사연구,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및 복원에서 자연유산 조사연구까지 연구영역 확대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건립

·문화재 훼손 증가에 따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필요성 대두, 문화재 조사·관리 등에 보존과학기술을 접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융복합연구 시행(2006년)

·문화유산융복합연구 맞춤형 융합연구 추진(2008년)

·중요문화권고대문화연구 및 문화유산융복합연구를 문화유산조사연구로 통합 추진(2016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사업규모 : 고대문화유산연구, 미술·건축·자연유산연구, 문화재 과학적 분석·복원·보존처리, 국내외교류협력, 보존과학기자재 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사 업 명
문화재 돌봄사업 (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호	문화재상시보호및조사	문화재 돌봄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 돌봄사업	12,015	12,539		12,182		△3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 등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 환경의 적극적 개선
-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한 복구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후보수 예산 절감하고, 취약계층 인력의 적극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2.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시행령 제4조(수리의 제한)

-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진경위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2009년)에 따른 기금 용도의 최우선 사업으로 야외노출 문화재를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5개 시도 시범사업으로 2010년 도입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이 사후 보수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계기 필요)
- 문화재 관리인력 부족으로 평소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멸실 등이 심화됨에 따라 상시적 일상 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예방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문

화유산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 마련
- 문화재 관련 청·장년층 일자리사업으로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계속사업
- 사업규모 : 야외 노출문화재(약 12,000개소), 상근 659명, 수시채용 1,000명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 등 6,561개소('17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국민신탁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문화재 돌봄사업)	50% ('13년 70%, '14-'15년 60%) '16년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민간보조(돌봄지원사업) ('17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사 업 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2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787	1,440		1,676		2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강구
- 문헌사·서예사·예술사 등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1차 자료인 석조 금석문 탁본 기록화 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자료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지원근거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 (제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관리 취약지의 문화재 훼손방지 등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등 추진

▪「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09.6.9) 및 불교계(조계종) 폐사지 조사 요청('09.6.18) 등 여론 반영

▪「사적 종합정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정('09.9.24) 및 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필요

▪「문화재보호법」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사업규모 : 폐사지 5,400여 개소, 금석문 1,150여 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등 민간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대한불교조계종(불교중앙박물관)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2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95	45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1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70 / 5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16,135	17,730		18,115		3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등에 방재시설 설치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안전경비원 배치 등으로 문화재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 확립
- 문화재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방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및 위험요소 예측 분석으로 방재력 향상 및 문화재 피해 예방대책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② 추진경위

- 문화재 화재('05년 낙산사, '08년 숭례문)를 계기로 방재를 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숭례문 방화('08.2.10)에 의한 훼손을 계기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경비원 배치 추진
- 문화재 전담인력의 부족(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사전 예방적 필요성 제기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비상시 및 일상관리를 포함한 문화재현장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 심화 및 방재사업의 획일적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 목조건축물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와 난방에 기인하며 발화시에는 단시간에 확산되어 전소되는 특성으로 조속한 대책 수립 필요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3,938	13,862	15,935	16,135	17,730

- 기타 : 2007~2009년 일반예산으로 편성, 2010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전환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70%, 5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소유자(관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민간 보조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궁능방재시스템구축 (2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궁능방재시스템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8,277	9,733		11,178		1,4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장비, 인력) 구축 운영·관리로 화재 등 재난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멸실을 사전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② 추진경위

- ‘04. 4월 : 국민의 문화재향유권 신장을 위해 야간개방 시범추진(덕수궁, 주2회)
- ‘06. 11월 : 야간개방 시범운영 확대(덕수궁, 주 6회)
- ‘07. 7월 : 선릉 추가 야간 개방
- ‘08.02.10. : 숭례문 화재로 인한 전소
- ‘08.02.11. : 숭례문 복구 합동대책본부 발족
- ‘08.02월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합동 목조문화재 점검
- ‘08.03.18. : 문화재청장 지시로 활용에 앞서 소방인프라 사전구축 노력
- ‘08.11월~’09.6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09.10월~’10.1월 : 4대궁·종묘·세종유적 소방시설 구축 완료
- ‘09.12월~’10.11월 :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14개 왕릉관리소, 3개 유적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문화재긴급보수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긴급보수사업	8,251	4,579		4,121		△4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연재해 및 재난에 따른 문화재 피해 발생시 즉시 긴급보수비를 투입, 신속한 복구로 문화재 추가 훼손 및 보수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원형유지·관리 도모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심각한 훼손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호(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추진경과
  · '04~'07년 :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추진(국비 100%)
  · '08~'09년 : 복권기금 축소로 동 사업이 제외되어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국비 70%)
  · '10년~ :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편성, 긴급보수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전액 보조로 변경(국비 100%)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 사업 시작년도 : 2014년
- 추진경과
  · 문화재청·울산시, 연구용역 추진, 보존 방안 마련 (‘03.~’09.)
  : 문화재위원회 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심각하여 근본대책 마련시까지 수위조절 추진 촉구(‘08, ’09, ‘11)
  · 국조실 조정, ‘수위조절(해발60m→52m)·대체수원 확보’ 합의 (‘09.6~’11.7)
  : ‘10.6, 울산시, 대체수원 확보 전제 조정안 수용(‘10.6)
  · 대체수원확보 관련사업 무산으로 합의 중단 (‘11.7~’11.11)
  ⅰ)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 부족 판정(B/C 0.86, ‘11.7)
  ⅱ) 울산시, 대체수원 없이 수위조절 불가 의견 제시(‘11.9~10)
  · 보존방안 추가 검토 및 재협의 추진 (‘11.10~’13.6)
  ⅰ) 대곡천암각화군 보존 학술조사 실시(문화재청, ‘11.12~‘12.12)
  → 세계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현재로선 수위조절안이 최적’
  ⅱ)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수리모형실험 실시(울산시, ‘12.5~‘13.3)
  → 수리학적 타당성조사 결과 ‘생태제방안이 최적’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카이네틱 댐 설치 추진 협약 (‘13.6.16)
: 울산시, 문화재청, 문체부, 국조실
·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추진 협약이행을 위한 세부합의('13.7.5, 문화재청↔울산시)
· 반구대암각화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 기초조사 용역 수행('13.9.3~12.31)
: 기술적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 및 기술평가 추진
· 문화재위원회 심의(5회, ‘14.1~6월)
· 울산시 가변형 임시 물막이 기본설계(‘14.9~’15.12)
· 기술검증평가단 운영(‘14.9~’16.6)
· 가변형 임시 물막이 사전검증 실시(‘15.3~’16.6)
· 문화재위원회, ‘가변형 임시 물막이 사업’ 중단 의결(‘16.7.21)
: 가변형 임시물막이 사업 사전검증 실험결과 수밀성 미확보 등 공법상 부적합
· 반구대 보존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울산시, ‘16.10~’17.2)
· 반구대 암각화 문양별 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안 용역 시행(문화재청, ‘16.12.~’17.6)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문화재 긴급보수), ’14~‘20(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 사업규모 : 문화재 긴급보수 매년 평균 70~80건 수준(‘17년 46건),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수립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문화재 긴급보수), 직접수행(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청(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1,420	2,000		1,220		△7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외국 경매(Christie's 등) 등에 출품된 동산 문화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제3의 국가로 재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

○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 성격의 우리 문화재가 현지에서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입하여 복원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보존·보호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호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② 추진경위

- '06년 국정감사 지적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직접 구입하는 방법 강구"
- '10.3월 : 명성황후 한글서한문 경매응찰 긴급매입(56백만원)
- '10.12월 : 부산 정란각 긴급매입(1,333백만원)
- '11.6월 : 조선 성종비 공혜왕후 어보 경매응찰 긴급매입(503백만원)
- '12.10월 : 워싱턴대한제국공사관 긴급매입(4,192백만원)
- '12.12월(1차), '13.3월(2차)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긴급매입(3,205백만원)
- '14.4월 : 곽분양행락도 경매응찰 긴급매입(71백만원), 대전 송용억 가옥 긴급매입(2,049백만원)
- '17 : 국내외→국외문화재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조정
- '17.12월 : 강노초상 경매응찰 긴급매입(436백만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외문화재 긴급매입 연 평균 2건 ~ 4건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대행사업)
- 사업시행주체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 (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군부대주둔지문화재조사보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보호	427	415		405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군부대 내 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후, 보고서를 발간하여 작전 및 각종 시설사업 시 등에 활용토록 하여,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 도모
-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군 문화재 관리교육 실시로 군부대 내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된다”
- SOFA합동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2005.12.30)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SOFA 합동위원회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05.7.7)
- ‘06~’17 미군 63개소 및 우리군 2,604개 주둔지 문화재조사실시 및 보고서 발간
-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체결 (‘10.12.1 제187차SOFA합동위원회)
- ‘06~’17 미군 모니터링 53개소 실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의 우리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 (약 15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사업 (23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12,953	16,296		15,641		△6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 사업에 따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발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매장문화재 수습조사를 지원하여 보호의 적시성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민간 지표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지표조사 절차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지표조사 절차 등)
  - ▪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설공사 지표조사 비용 지원

<긴급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사업 시작년도

· 긴급 발굴조사 지원 : 1993년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2004년

· 지표조사 지원 : 2015년

- 추진배경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 지원 필요성 대두

· 2010년도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 소규모발굴전담팀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3만㎡ 미만의 지표조사 국비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사업규모

·단독주택 및 공장,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축공사 발굴조사 300건 내외 지원

·지자체 긴급발굴조사 20건 내외 지원

·민간시행 3만㎡이하 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230건 내외 지원

·중요 폐사지 3개소 발굴조사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중용폐사지), 지자체보조(긴급발굴), 민간위탁(소규모발굴

및 지표조사지원), 직접시행(경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단체(한국문화재재단,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농어업인, 영세상공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한국문화재재단 등	1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1조

사 업 명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2334-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6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지원	2,768	10,852		7,406		▵ 3,4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출토유물에 대한 신속한 보존처리 및 안전한 보관·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기반 강화
- 출토유물의 상시 공개를 통한 학계 및 전 국민의 문화향유권 충족
- 국토 개발 등에 따른 자연유산(동물·식물, 지질, 희귀화석) 표본 훼손, 멸실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수장시설의 시급한 확보
- 문화재 연대측정의 분석기술 확보, 비용절감 및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고대

생활문화 복원 및 핵심 기술역량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5조 (기금의 용도)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년 ~ 계속
- 추진배경

·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출토유물이 급증함에 따라 과학적 보존·관리 전문시설의 확충 필요
· 국토개발 등에 따른 자연유산 표본 훼손, 멸실 요인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유산의 훼손 멸실 속도 증가에 대비한 절대적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건립 추진(2013년)
·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및 가야지역을 아우르는 통시대적·공간적 연구핵심 거점으로서의 연구시설 구축을 위하여 건립 추진(2015년)
· 2000년대 이후 급증한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 및 중요 분석시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연구를 위한 시설 추진(2017년)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17.2.28.)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출토 유물 및 분석시료 보관·연구를 위한 공간 확보 추진

- 추진경과

·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2011년 ~ 2014년

·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건립 2013년 ~ 2015년

·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2013년 ~ 2015년

·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2013년 ~ 2015년

·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2015년 ~ 2017년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 2017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건립,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관련 학계 및 연구자

사 업 명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운영 및 관리 (2334-3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서해지역 수중문화재 발굴 성과 홍보와 역사적 가치 조명
- 서해 바닷길의 역사성과 국제성을 전시콘텐츠로 구축함으로서 세계적인 수중문화재 전시공간으로 비전 제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② 추진경위

- '13. 12. 2. :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축공사 착공
- '14. 12. 5. : 건축공사(1차) 준공
- '14. 12. 6. : 건축공사(2차)착공('14.12.6. ~ '15.3.31.)
- '15. 2. 9. :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2차) 착공
- '15. 9. 1. : 건축공사(3차)착공('15.9.1. ~ '16.3.31.)
- '16. 4. 1. : 건축공사(4차)착공('16.4.1. ~ '16.11.30.)
- '17. 3. 1. : 건축공사(5차)착공('17.3.1 ~ '17.6.30.)
- '17. 7. 11. :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추진 중(누적공정률 : 91.8%)
- '17. 10. 31. : 건축공사 완공 예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19
- 사업규모 : 전시공간 조성(총 면적 : 2,417㎡)

구분	전시내용(안)	면적	비고
제1전시실	서해의 바닷길	192.41	
제2전시실	바다에서 출토된 목간, 도자기	228.18	
제3전시실	해저출토 고선박 전시	453.60	
기획전시실	특별전 개최	243.11	
영상관	수중발굴 애니메이션 영상	226.31	
선체 보관고 2	마도1호선(고려, 조운선)	1,073.47	
총 면적		2,417.0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해양문화유산 관련자 등

사 업 명
기금운영비 (23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76	201
명칭	문화재보호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금운영비	135	133		13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0년

ㅇ 추진배경

- 기금자산·부채 등에 대한 관리·운영, 성과분석·평가
- 부가금 징수를 위한 사업비 및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 전국 시·도(약 60개소)로부터 문화재관람료 납부금·징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기금운용을 위한 인력 1명, 기금운용심의회·자산운용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운영,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총괄계정) (8990-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0	89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총괄계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	-		110		1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에 따른 이자 상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제2항(예수기간 및 이자율)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사업시작년도 : 2018년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문화재보호기금 재원으로 전출함에 따른 이자상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8년~계속
- 사업규모 :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문화재보호기금에서복권기금으로의전출 (8999-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복권기금 반환금	문화재보호기금에서복권기금으로의전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문화재보호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전출	4,555	2,105		1,011		△1,0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된 복권기금의 집행잔액을 복권위원회에 반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부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3년

ㅇ 복권기금사업 불용액의 정산·반납은 2011년 결산부터 법정배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

ㅇ 기금간 전출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발생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기금의 기금전출금 비목으로 편성하여 반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계속
- 사업규모 : 복권기금 반환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